#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567

발의연월일: 2025. 2. 28.

발 의 자:허성무·채현일·오세희

허종식 · 김교흥 · 김병주

박선원 · 김문수 · 김동아

송재봉 • 권향엽 • 이병진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최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산업, 원자력산업, 우주항공산업 분야의 첨단기술을 확보하려는 각국의 경쟁이치열한데, 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분야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바이오의약품"을 "바이오의약품,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제10조(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의 연구개 세액공제) ① -----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 · 인력개발비"라 한 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 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 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 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 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 바이오의약품, 방위산업, 원자 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력, 우주항공-----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 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 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 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 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

가.·나.(생략) 3.(생략) ② ~ ⑥ (생략)

_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